

SAC 아트홀 대관 약정서

제 1조 (목적)

본 약관의 제정 목적은 SAC 아트홀 대여에 따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간운영을 활용함에 있다.

제 2조 (대관과 대관료의 정의)

- ① 공연, 이벤트, 회의, 등을 위하여 시설, 분장실, 장비(음향, 조명, 영상 등)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과 관련 부수행위를 위하여 공연장 시설 및 장비를 임차 사용하는 행위를 '대관'이라고 한다.
- ② 대관업무 및 공연장의 유지관리,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'운영자'라 한다.
- ③ 대관신청을 하여 대관승인을 받은 자를 '사용자'라 한다.
- ④ 대관의 범위는 공연장 내 기본시설, 분장실, 장비(음향, 조명, 영상 등)의 사용을 포함한다.
- ⑤ 대관료의 규정은 사전에 공지한 '운영자'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조 (대관신청 및 계약의 성립)

- ① 대관을 원하는 자는 운영자가 요구하는 소정양식(대관신청서, 행사계획서)을 제출하여 대관승인을 얻어야 하며, 대관계약의 성립은 대관료 산정 견적서를 사용자가 수령 후 계약금의 입금을 완료한 후 계약이 성립된다. 구두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② 대관료 산정 견적서에 명시된 일자에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하여야 하며, 만약 계약금 및 잔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운영자는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.

제 4조 (대관규정)

- ① 기본 대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다.
- ②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까지, 저녁시간 6시에서 7시까지는 대관시간에서 제외 된다.
- ③ 단, 저녁시간은 협의가 가능하고 저녁시간에 관객 입장할 경우는 콘솔 부스 만 사용 불가하고 공연장은 사용 가능하다.
- ③ 심야대관은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이다.
- ④ 공연시간은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1일 1회 4시간 2회 이상의 공연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- ⑤ 대관기간 중 공연이 없는 날에 운영자는 다음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연장의 임시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 공연 당일에도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.
- ⑥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자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⑥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자는 대관을 취소 할 수 있다.
- ⑦ 사용자는 공연장의 시설유지 및 안전을 위해 운영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, 이에 불응할 경우 운영자는 대관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.
- ⑧ 사용자는 대관 종료 시 대관 전 시설상태로 완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시설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운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운영자가 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- ⑨ 운영자는 사용자가 임의로 보관한 물품에 대하여 관리책임은 지지 않는다.
- ⑩ 사용자는 공연 종료 후 극장 내부, 분장실을 청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⑪ 장비 사용에 있어서 소모품은 사용자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야 한다.
- ⑫ 냉난방은 리허설(1회) 및 공연 중에만 가능하며 추가로 이용 시 별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.
- ⑬ 하우스 어셔 등 관객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.
- ⑭ 극장 안에는 꽃다발 및 화환의 반입을 금지하며, 물을 포함한 음료 및 음식 반입을 금지한다.
- ⑮ 관객 및 사용자에게 무료 주차권 제공 또는 할인은 되지 않는다.
- ⑯ 운영자의 동의 없이 대관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운영자는 대관 사용권리를 회수할 수 있으며, 이미 납입된 대관료는 그 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.
- ⑰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자의 요구가 있을 시 무조건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.
- ⑱ 운영자는 사용자가 반입하는 물건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반입을 거절할 수 있다.
- ⑲ 사용자가 반입하는 모든 장비 및 설치물은 방염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.

제 5조 (대관변경 및 취소)

- 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 신청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대관 변경/취소 신청서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계약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 할 수 있다.
- ② 사용자는 위 ①항에 의한 대관료 반환 외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영자에게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한다.
가. 제 3조 ②항 의한 시일로부터 잔금입금 후 취소 시 전체 대관료의 70%를 반환한다.
나. 제 3조 ②항 의한 시일로부터 잔금입금 전 취소 시 계약금의 70%를 반환한다.
다. 제 4조 ⑥항에 의한 대관 불능 상태 발생할 경우 납입된 대관료의 100%를 반환한다.

제 6조 (기타 내용)

위 내용 이외 기타 사항은 SAC아트홀 홈페이지 공고 대관 규정에 따른다.

위 내용을 읽고 확인 하였습니다.

2022년 월 일

대관 단체

대표자 성명

서명